

#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 .

제출자 : 구미시장

## 1. 제안이유

-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배수설비 대행업자 범위를 신설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도모
- 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분뇨 수집·운반업자 폐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구미시에서 위탁·운영하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경영안정 및 공공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

## 2. 주요내용

- 가. 배수설비 사용개시 등 신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 나. 배수설비 대행업자 범위 신설(안 제13조제6항)
-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
- 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부과기준 세부내용 추가 및 신설
-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명확화(안 제21조, 제24조)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법정공고 방법 개선(안 제21조)
  -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시기 명확화(안 제23조)
  - 원인자부담금 사용범위 신설(안 제24조의2)

라. 분뇨 수집·운반 관련 용어 정비(안 제25조 ~ 제30조)

마.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조항 신설(안 제26조의2)

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1m<sup>3</sup>당 19,800원) 및 사용료 감면(별표 6)

- 기존 기본요금+초과요금 체계 ⇒ 기본요금 제도로 요금체계 변경

### 3.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 「지방자치법」,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책기획과, 감사담당관, 업무과, 환경관리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의 신고
2.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 중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1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7조제2항 및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장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대행자에게 공사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중 “제27조제6항”을 “제27조제9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32조제8항”을 “제32조제9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를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로 한다.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타행위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착공일 기준년도 단가로 추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설치”를 “설치·변경설치”로, “허가”를 “인·허가”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 중 “단독정화조”를 “정화조”로 한다.

제26조의 제목“(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을“(분뇨수집·운반의 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을 함에 있어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중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을 “분뇨수집·운반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존대행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을 “대행업자의 분뇨수집·운반”으로, “대행업체”를 “대행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영수지 악화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경영악화 등 분뇨수집·운반”으로, “청소대행”을 “분뇨수집·운반”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의2 및 영 제33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원계획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선정방법, 지급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한다.

⑤ 폐업지원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원을 위한 절차와 방법, 지원단가의 선정, 적용방법 및 감차차량에 대한 처리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하여 시행한다.

제27조의 제목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사용료 등의 부과·징수)”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사용료 등의 부과·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한다)는”을 “한다)를”로, “같다”를 “같이 부과·징수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 대행업자”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로 하고, 제4항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을 “분뇨수집·운반 대행을”로 한다.

제35조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의 접수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6에 의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2025년 3월부터 시행한다.

■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3]

수질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 하수도 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 하수도 사용료

- 수질 하수도 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m<sup>3</sup>/시간)]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6]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단위 : 원]

용량	계	수수료	사용료	비고
1m <sup>3</sup> 당	19,800	19,800	0	-

그 밖의 침출수 처리를 위한 처리장 사용료

[단위 : 원]

용량	사용료	비고
1m <sup>3</sup> 당	1,000	-

■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이행 통지서

앞면

우 편 엽 서

구미우체국

보내는사람

요금별납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 미 시 장

39281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이행통지

○ 관리번호 :

○ 청소기한:

○ 발송일:

받는사람

뒷면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이행 통지서

1. 평소 시정발전과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내부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귀하께서 사용·관리하시는 시설은 앞면에 표기된 기한까지 내부청소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시청 환경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업체♣

· 452-3000 · 452-8900 · 452-0022 · 481-2662

구 미 시 장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u></li> <li><u>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 자 할 때</u></li> <li><u>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u></li> <li><u>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u></li> </ol> <p><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u></p>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 ⑤ (생략)  
<신설>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의 신고

2.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  
-----  
-----  
--- 시장-----  
-----.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27조제2항 및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장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에게 공사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27조제9항-----  
-----  
-----  
-----.

1 ~ 2호 (생략)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

② (생략)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른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후단 신설>

2. ~ 4. (생략)

1 ~ 2호 (현행과 같음)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2조제9항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  
-----  
-----  
-----.

1. -----  
-----  
-----  
-----  
-----.  
이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 4. (현행과 같음)

5. 오수발생량 1m<sup>3</sup>/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생략)

<신설>

제2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생략)

1. ~ 3. (생략)

4.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허가 때 부과

② (생략)

<신설>

5. -----  
-----  
-----  
-----  
-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타행위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착공일 기준년도 단가로 추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제2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설치·변경설치-----  
- 인·허가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p>제2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통지)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u>단독정화조</u> 및 <u>오수처리시설</u>)에 대하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월 10일 전에 청소이행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p>	<p>제2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통지) ----- -----<u>정화조</u> ----- ----- ----- ----- ----- ----- ----- ----- -----</p>
<p>제26조(<u>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u>) ① 시장은 <u>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함에 있어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른 <u>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는 시장과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p> <p>③ 시장은 <u>기존대행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u></p>	<p>제26조(<u>분뇨수집·운반의 대행</u>) ① 시장은 <u>분뇨수집·운반을 함에 있어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u></p> <p>② ----- <u>분뇨수집·운반을</u> ----- ----- ----- ----- -----</p> <p>③ ----- <u>대행업자의 분뇨수집·운반</u>-----</p>

의 청소 등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추가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행업자의 경영수지 악화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대행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

<신 설>

----- 대  
행업자-----.

④ ----- 경영악화  
등 분뇨수집·운반-----  
----- 분뇨수집·운  
반 -----.

제26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의2 및 영 제33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원계획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선정방법, 지급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 대행업자

2. (생략)

② (생략)

제29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후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대행징수한 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0조(감면 등) ①(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2.(생략)

③ (생략)

-----  
-----.

1. 분뇨수집·운반업자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① -----  
-----분뇨수집·운반-----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  
-----  
-----.

1. ~ 2.(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2항의  
각 호에 의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하  
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  
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상하수도사업소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3. ~ 21. (생략)

④ -----  
----- 분뇨수집·운반  
대행 -----  
-----  
-----  
-----.

제35조(권한의 위임) -----  
----- 상하수도사업  
본부장-----.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의 접수

3. ~ 21.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 □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자는 해당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⑦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

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⑩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② ~ ③ 생략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2020.5.26.>

#### ⑤ 생략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 ①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②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⑦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⑧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 5.>

제56조의2(분노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노수집·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용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용자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4. 5.]

## □ 「물환경보전법」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제37조·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⑨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아. (생략)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실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 거래 공정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 비율은 70퍼센트 이상 높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지역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지원 및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소 관 부 서		하 수 과
입 안 자	과 장	장 창 식
	팀 장	조 근 숙
	담 당 자	박 천 민 (480-4513)